



## 교육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

---

### 1. 관련

- 평생학습정책과-2913·2914(2019.4.25.)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배포 협조 요청
- 평생학습정책과-7394(2019.10.28.)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 및 안내자료 배포 협조 요청

2. 지방자치단체 소속 대민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우리부에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("표시" 및 "광고"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참조)

실제 자격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한 공공기관 담당자가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오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붙임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관련 산하기관 등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. 끝.

## 교 육 부 장 관



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, 기초자치단체(1), 기초자치단체(2), 광역자치단체, 시도교육청,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

행정사무관 **전형은** 평생학습정책 전결 2020.3.16.  
과장 **최하영**

협조자

시행 평생 학습정책과-2552 (2020. 3. 16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-2동 교육부 평생 학습정책과 / [www.moe.go.kr](http://www.moe.go.kr)

전화번호 044-203-6381 팩스번호 044-203-6898 / [mulnet1052@korea.kr](mailto:mulnet1052@korea.kr) / 대국민 공개